



Korean Tax Update

Samil Commentary

February 16, 2021

[2021년 국세행정 운영방향](#)

[ASEAN 10개국과 이중과세방지협정 발효 완료](#)

[최신 세무예규판례](#)

2021년 국세행정 운영방향

국세청은 1월 28일 납세자 중심의 세심한 세정운영과 디지털 납세서비스 혁신, 공정성 강화의 토대 위에 코로나19 위기극복과 경기반등을 위한 국세행정의 역할과 역량 강화를 위한 2021년 국세행정 운영방향을 발표함.

국세청은 경제회복을 위한 국민의 노력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전체 조사건수를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감축 운영하여 세무조사의 부담을 축소할 것이라고 함. 즉, 코로나19 이전에는 16,000여 건 수준으로 운영하였으나, 2020년 14,000여 건 규모로 감축하였고 올해도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함.

세무조사 관련하여 구체적인 방향은 다음과 같음.

-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등의 조치를 2021년 말까지 연장 시행하고 매출 급감 사업자 등으로 세무조사 제외 대상을 확대할 예정임.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호황을 누리는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세정지원을 배제할 것임.
- 중소기업 대상의 간편조사에서 현장조사 기간을 50% 이하로 원칙적 제한하고, 납세자가 신고 과정에서 누락한 조세공제·감면 안내, 향후 세무이슈 진단 등 세무 컨설팅

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할 예정임.

- 모범납세자의 경우 조사유예 혜택 종료 이후에도 정기조사 사전통지 기한을 기준 15일에서 30일로 확대하는 혜택을 부여할 것임.
- 조사착수·진행·종결 및 종결 이후 불복단계까지 세무조사의 주요 절차를 모바일로 안내하고, 자료요구에 대한 해명자료·조사중지 신청서 등의 온라인 제출시스템 개발로 대면조사 부담을 완화할 예정임.
- 한국판 뉴딜 예산을 지원받거나 관련 사업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제외·유예하고, R&D 세액공제 사전 심사에 패스트 트랙을 도입할 예정임.

ASEAN 10개국과 이중과세방지협정 발효 완료

한-캄보디아 양국 간 기업투자 및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2019년 11월 25일 서명한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정)이 2021년 1월 29일부터 정식 발효하고 2022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하기로 함. 동 조세조약 발효로 우리나라가 라오스, 말레이시아 등 ASEAN 10개국과 체결한 모든 조세조약이 발효되게 됨.

또한, 1994년 5월 20일 하노이에서 서명된 한-베트남 조세조약을 개정하는 제2의정서가 2021년 1월 20일자로 발효됨.

한-캄보디아 조세조약의 주요 내용

한-캄보디아 조세조약 신설로 한-캄보디아간 투자 등 경제교류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 **사업소득:** 사무실, 공장, 지점, 건설현장(9개월 초과 지속), 자원탐사 및 개발(6개월 초과 지속) 등 현지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만 소득발생지국에서 과세 가능
- **건설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 건설활동 수행 시 과세대상 사업소득의 범위를 규정하여 건설현장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활동만이 과세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시
- **배당·이자·사용료소득:** 기존 캄보디아 세율 14%보다 낮은 세율 10%를 적용토록 하여 우리 진출기업의 현지 세부담 경감
- **국제운수소득:** 국제항공소득은 기업의 거주지국에서만 과세 가능하고, 국제해운소득은 소득발생지국에서 과세 가능하나 50% 감면(캄보디아 국내세율 14% → 체결 후 7%)
-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허용:** 조약 발효 후 10년간 캄보디아가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해 우리나라 기업이 캄보디아에서 납부할 세금을 감면할 경우 감면된 세액에 대해서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

한-베트남 조세조약의 주요 개정내용

- **협정이 적용되는 현행 조세:** 한국의 농어촌특별세 추가
-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윤:** 재화나 상품의 운송에 사용되는 컨테이너(컨테이너 수송을 위한 트레일러 및 관련 장비를 포함한다)의 사용·관리 또는 임대로부터 발생한 이윤을 포함하도록 함.
- **사용료:** 사용료 소득에 기술용역대가를 추가하고 7.5%로 과세하는 조항 추가: 기술용역대가란 그 지급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 수행된 경영, 기술 또는 자문 성격의 모든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그 지급인의 직원에게 지급된 지급금을 제외한 모든 인에 대한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함.
특허권 등: 5%(동일), 그 밖의 모든 경우: 15% → 10%
- **양도소득** 그 동안 불명확 했던 부동산 보유법인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한쪽 체약국 거주자가 전체 주식가치의 50%를 초과하는 부분이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한 주식을 양도하여 얻는 소득은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라고 명확히 규정함.
종전에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주식 이외의 주식 양도소득은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었음. 개정으로 다른 주식이 한쪽 체약국 거주자인 회사에 대한 지분참가비율이 최소 15%인 경우 그 주식의 양도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한쪽 국가에서 과세할 수 있게 됨.

최신 세무예규판례

신주를 고가로 인수한 주주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

온라인게임 등 인터넷사업을 영위하는 이번 사건의 원고는 중국 게임시장 진출을 위해 2007. 4. 중국법인 A와 함께 영국령 케이만 군도에 외국법인 B를 설립함. 원고는 2010. 7. 외국법인 B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증자대금으로 미화 88만 달러를 납입함. 이로부터 약 1개월 후인 2010. 8. 원고는 외국법인 B 주식을 외국법인 C에 미화 10달러에 양도하고, 2010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위 유상증자금액을 손금에 산입함.

이에 대해 피고는 유상증자로 인수한 신주의 시가가 '0원'이므로, 이 사건 유상증자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동시에 원고가 주식발행법인인 외국법인 B에게 이익을 분여하였으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 2(2019. 2. 12. 개정 전 규정으로 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함)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유상증자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2010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손금에 산입한 이 사건 유상증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함.

이에 대하여 이번 사건의 원심에서는 (1) 유상증자로 인수한 신주의 취득가액은 유상증자금액이며, (2) ① 이 사건 규정은 주주 상호간의 이익 분여에 관한 규정임이 명백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 보완적 규정으로 보이는 점, ② 자본거래의 성격상 주주가 주식발행법인에 이익을 분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신주를 고가로 인수한 주주가 신주발행법인에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보고 이 사건 규정을 적용한다면 재무상태가 매우 악화된 법인은 추가 자금 조달이 어려워져 사업활동의 기회를 상실하는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규정은 신주를 고가로 인수한 주주가 주식발행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 아니라고 하면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으며 (서울고법2017누82712, 2018. 8. 22.),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을 긍정하면서 원고 승소 판결함. (대법2018두56602, 2020. 12. 10.).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 규정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 2는 신주를 고가로 인수한 주주가 주식발행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보아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 아님을 시사하는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다만, 기획재정부는 “자본거래시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하는 범위에 자본거래로 인하여 이익을 분여하는 모든 법인이 포함되도록 규정을 명확화”한다는 취지로 2019. 2. 12. 이 사건 규정을 개정하였는 바, 개정규정에 대해서도 대법원의 입장이 동일하게 유지될지 여부에 대하여는 향후 판결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해외주재원에 대한 인건비 부담비율이 50% 이상인 중소·중견기업의 인건비 손금산입 여부

2020. 2. 11.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호 개정 시, 내국법인(중소·중견기업에 한하며, 이하 '내국법인'이라 함)이 100% 직·간접적으로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이하 '해외주재원'이라 함)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내국법인과 해외현지법인이 지급한 인건비의 합계액의 50% 미만인 경우, 해당 인건비를 손금 산입 대상 인건비에 포함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음.

한편, 이번 사안은 해외 주재원에 대한 내국법인의 인건비 부담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해당 인건비 전액을 손금불산입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국세청에 질의한 사안임.

이에 대하여 국세청은, 해당 해외주재원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 인건비 전액을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나, 해당 해외주재원이 내국법인 업무에 사실상 종사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내국법인의 업무 종사 여부는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과 범위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함. (서면-2020-법인-2823, 2020. 8. 25.)

따라서, 이번 유권해석은, 내국법인의 해외주재원에 대한 인건비 부담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해당 주재원의 내국법인 업무 종사 여부가 손금산입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임을 시사할 뿐만 아니라, 사실판단 사항인 내국법인의 업무 종사 여부에 대해서는 이를 입증할 자료의 구비가 필요함을 의미하는 유권해석이라 판단됨. 아울러, 이번 유권해석의 쟁점은 아니지만, 해당 주재원이 내국법인과 해외현지법인의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손금산입 기준 및 범위 등과 관련하여 논란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어 보임.

Korean Tax Update에 소개된 주제 중 주요 주제에 대해 삼일회계법인의 전문가가 직접 설명하는 동영상을 [삼일 공식 YouTube 채널](#)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고가의 신주인수,
부당행위계산부인 일까?](#)



Contacts

국제조세 이중현 709-0598 alex.lee@pwc.com	내국세 오연관 709-0342 yeon-gwan.oh@pwc.com	허윤제 709-0686 yun-je.heo@pwc.com	M&A 세무 정민수 709-0638 minsoo.jung@pwc.com
이상도 709-0288 sang-do.lee@pwc.com	이영신 709-4756 young-sin.lee@pwc.com	성창석 3781-9011 chang-seok.sung@pwc.com	사모펀드에 대한 M&A 세무자문 탁정수 3781-1481 Jeongsoo.tak@pwc.com
김상운 709-0789 sang-woon.kim@pwc.com	김진호 709-0661 jin-ho.kim@pwc.com	서연정 3781-9957 youn-jung.seo@pwc.com	김경호 709-7975 gyungho1.kim@pwc.com
이동복 709-4768 dongbok.lee@pwc.com	정복석 709-0914 boksuk.jung@pwc.com	이전가격 & 국제통상 헨리 안 (inbound tax) 3781-2594 henry.an@pwc.com	이종형 709-8185 Jonghyung.lee@pwc.com
정종만 709-4767 chong-man.chung@pwc.com	나승도 709-4068 seungdo.na@pwc.com	전원엽 3781-2599 won-yeob.chon@pwc.com	해외파견 세무 및 기업운영지원 박주희 3781-2387 Ju-hee_1.park@pwc.com
신현창 709-7904 hyun-chang.shin@pwc.com	남형석 709-0382 hyungsuk.nam@pwc.com	조정환 709-8895 junghwan.cho@pwc.com	상속증여 & 주식변동 이현종 709-6459 hyun-jong.lee@pwc.com
차일규 3781-3173 il-gyu.cha@pwc.com	조성욱 709-8184 sung-wook.fs1.cho@pwc.com	김영주 709-4098 young-joo.kim@pwc.com	이용 3781-9025 yong.lee@pwc.com
조창호 3781-3264 changho.jo@pwc.com	노영석 709-0877 yongsuk.noh@pwc.com	김찬규 709-6415 chan-kyu.kim@pwc.com	지방세 조영재 709-0932 young-jae.cho@pwc.com
오남교 709-4754 nam-gyo.oh@pwc.com	정선홍 709-0937 sun-heung.jung@pwc.com	해외투자 세무자문 김주덕 709-0707 michael.kim@pwc.com	비영리법인 지원센터 변영선 3781-9684 youngsun.pyun@pwc.com
서백영 709-0905 baek-young.seo@pwc.com	남동진 709-0656 dong-jin.nam@pwc.com	김홍현 709-3320 Hong-hyeon.kim@pwc.com	중소기업-스타트업 지원센터 김봉균 3781-9975 bong-kyoon.kim@pwc.com
류성무 709-4761 seongmoo.ryu@pwc.com	김광수 709-4055 Kwang.soo.kim@pwc.com	이동열 3781-9812 dong-youl.lee@pwc.com	Knowledge & Innovation 조한철 3781-2577 han-chul.cho@pwc.com
김영옥 709-7902 young-ok.kim@pwc.com	신윤섭 709-0906 yoon-sup.shin@pwc.com	금융세무 박태진 709-8833 taejin.park@pwc.com	삼일인포마인 이희태 3489-3001 heui-tae.lee@pwc.com
심수아 3781-3113 sooa.shim@pwc.com	선병오 3781-9002 byung-oh.sun@pwc.com	정훈 709-3383 hoon.gp6.jung@pwc.com	
로버트브로웰 709-8896 robert.browell@pwc.com	장현준 709-4004 hyeonjun.jang@pwc.com	세무진단 및 세무조사지원 김성영 709-4752 sung-young.kim@pwc.com	
	최유철 3781-9202 yu-chul.choi@pwc.com		
	박기운 3781-9187 ki-un.park@pwc.com		



삼일회계법인 뉴스레터는 삼일회계법인의 고객을 위한 일반적인 정보제공 및 지식전달을 위하여 배포되는 것으로, 구체적인 회계문제나 세무이슈에 대한 삼일회계법인의 의견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삼일회계법인의 뉴스레터에 담긴 내용과 관련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나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전문가의 자문 또는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매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클릭하십시오.